

보도 일시	2022. 12. 28.(수) 09:00 2022. 12. 28.(수) 석간	배포 일시	2022. 12. 28.(수)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오영민 (044-202-8804)
		담당자	사무관 김용욱 (044-202-8812) 전문위원 이현숙 (044-202-8813)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723개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28.(수),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 대상은 '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개소*이다. 공표 대상 사업장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2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23년 이후 공표 예정임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 공표 기준(산안법 시행령 제10조)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①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17개소

17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주)건우(13명 사망, '20년), 세진기업(3명 사망, '19년), 유아건설(3명 사망, '19년) 등이다.

* '21년 이전 사망재해가 발생하여 재판에 계류 중인 사업장이 '22년에 형이 확정되면 공표 대상에 포함

②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 439개소

439개 공표 사업장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272개소, 62.0%), '50인 미만'(372개소, 84.7%)이 대부분이며, 이번에 공표되는 주요 사업장은 건설업 디엘이앤씨(주), 대방건설(주), 제조업 성일하이텍(주), (주)케이디에프 보령지점 등이다.

③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15개소

15개 공표 사업장 대부분 화재 및 폭발사고(10개소, 66.7%)이며,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롯데케미칼(주) 대산공장(5명 부상, '20년), (주)고려노벨화약(4명 부상, '20년), 버숨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주)(3명 부상, '21년) 등 이다.

④ 산재 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 ⇨ 산재은폐 5개소, 산재미보고 37개소

산재 은폐로 처벌되어 공표되는 사업장은 대성에너지(주), 레오개발 주식회사, (주)정민건설 등 5개소이며,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롯데네슬레코리아주식회사, 두산에너지빌리티(주), 도레이 첨단소재(주) 3공장 등 37개소이다.

또한, 사망재해(1호, 2호) 및 중대산업사고(3호)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안법 제63조)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원청 224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 주요 공표 사업장: [건설] 현대건설(주), 지에스건설(주) 등 [제조] 현대제철 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과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라고 하면서,

“이번 명단공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붙임1]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제도 개요

[붙임2] 세부 기준별 공표 사업장 주요 현황



붙임1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 개요

- (목적)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및 불이행에 따라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 → 경각심 제고 등 사업주 의무이행 유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대상)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형(刑)이 확정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준]

-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제10조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 제10조에 따른 '21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공표

* '21년 이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공표는 舊 산업안전보건법령(법률 제14788호 및 대통령령 제28368호)에 따라 시행 [☞ 붙임1 참조]

제1호. (사망자 2명 이상)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제2호. (사망만인율)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제3호. (중대산업사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제4호. (산재은폐)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제5호. (산재미보고)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② (원청도 함께 공표)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인 사업주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사업장이 공표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함께 공표

③ (원·하청 통합공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산출한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공표

- (향후 조치) 공표된 사업장은 3년간('25년까지) 정부포상에서 제외

○ 지방청별로 공표 사업장에 대해 CEO 안전교육 실시

[제1항 제1호] 사망재해 2명 이상 사업장

❖ (대상)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연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으로 인한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17개소*
- 건설업이 76.5% 차지(13개소)

연번	사업장명 (현장명)	업종	사망자 수	규모
1	(원청) (주)태영건설 (하청) (주)강호건설사업 (과천지식정보타운S-3BL2공구및S-7BL3공구아파트건설공사)	건설업	2	50인미만
2	바위산업(주)포천지점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및 기타광업	2	50인미만
3	세진정밀 (농업회사법인산수들염소도축장 건축공사 배관공사현장)	건설업	2	50인미만
4	(원청) (주)건우 (하청) 명성ENG (이천 소고리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신축공사)	건설업	13	100~299인
5	광동전력(주) (매송체육공원 축구장 외 4개소 조명보수공사)	건설업	2	50인미만
6	(원청) (주)오렌지엔지니어링 (원청) 범아건설(주) (하청) (주)다세움건설 (하수관로신설(확충)공사[장림처리구역(하단동일원)])	건설업	2	50인미만
7	(주)경인창호 (발코니 창호공사)	건설업	2	50인미만
8	(주)광진에프에이엔지니어링 (충무화학 영월공장 이송라인 수정 및 포장반 개선공사)	건설업	2	50인미만
9	(원청) 실버렉스 (하청) (주)에이엠에스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	50인미만
10	(원청) (주)다원디앤아이건설 (하청) 개인사업자 김희열 (하청) (주)삼목 (YG-1송도사옥 및 연구소 신축공사)	건설업	2	50인~99인
11	기성스틸(주) 평택지점	도소매·음식·숙박업	2	50인미만
12	(하청) 세진기업 (하청) 리프트서진(주) (속초 조양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건설업	3	100~299인
13	(원청) 엘브이디코리아(유) (하청) 케이제이로지스틱스(주) (LVD CNC 절곡기 설치공사)	건설업	2	50인미만
14	(원청) (주)부원건설 (하청) 유아건설 (세종 TREESHADE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건설업	3	100~299인
15	(원청) (주)한영 (하청) 세인ENG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	2	50인미만
16	관악개발(주) (영흥화력제 2부두 하자보수공사)	건설업	2	50인미만
17	(원청) 일진건설(주) 삼영글로벌(舊) (하청) (주)한성에스엘씨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공사)	건설업	2	100~299인

[제1항 제2호]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 (대상)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사망만인율이 동종 평균 이상인 공표대상 사업장은 디엘이앤씨(주), 대방건설(주) 등 총 439개소*

* 이 중 180개소는 구법(중대재해 발생 + 규모별 동종 평균재해율 상회) 공표 사업장과 중복

- (업종별) 절반 이상(272개소, 62.0%)이 건설업이며, 이 외에는 기계기구·금속제조업(13.2%),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3.9%), 화학·고무제품제조업(3.0%) 순

구 분	계	건설업	기계기구· 금속· 비금속 제조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화학· 고무· 제품 제조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수제품· 기타제품 제조업	기 타
사업장 수 (점유율, %)	439 (100.0)	272 (62.0)	58 (13.2)	17 (3.9)	13 (3.0)	11 (2.5)	10 (2.3)	58 (13.2)

- (규모별) 50명 미만 사업장(372개소, 84.7%)이 대부분이며, 50~99명(6.2%), 100~299명(5.9%) 순

구 분	계	50명미만	50 ~ 99명	100 ~ 299명	300 ~ 499명	500 ~ 999명	1,000명 이상
사업장 수 (점유율, %)	439 (100.0)	372 (84.7)	27 (6.2)	26 (5.9)	6 (1.4)	6 (1.4)	2 (0.5)

[제1항 제3호]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대상) 법 제44조1항의 규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15개소*이며,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대부분 (10개소, 66.7%)

연번	사업장명	재해 발생일	사고유형	피해정도(명)	
				사망	부상
1	(원청) 지에스칼텍스(주) (하청) 그린포트	'21.1.4.	화재	0	2
2	(원청) 대상(주)바이오군산공장 (하청) 대영시스템	'21.1.11.	누출	0	2
3	(주)엔지켐생명과학 제천공장	'21.3.23.	폭발	0	2
4	(주)위드텍	'21.4.6.	누출	0	1
5	(주)진합	'21.6.17.	화재	0	2
6	(원청) 진주시 하수운영과 (하청) (주)신세기건설	'21.6.29.	폭발	0	3
7	버숨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유)	'21.7.8.	폭발	0	3
8	주식회사 팜한농	'21.7.24.	누출	0	1
9	(원청) 롯데케미칼(주) 대산공장 (하청) (주)대신기공	'20.10.16	화재	0	2
10	(주)고려노벨화약	'20.6.1	폭발	0	4
11	(주)경보제약	'20.4.4	화재	0	1
12	(원청) 현대제철(주)당진공장 (하청) (주)하이엠엔알	'20.3.30	누출	0	2
13	(원청) (주)케이씨씨 대죽2공장 (하청) (주)케이지아이	'20.3.18	화재	0	2
14	롯데케미칼(주)대산공장	'20.3.4	폭발	0	5
15	한전KPS(주)	18.5.9	누출	0	1

[제1항 제4호] 산재은폐 사업장

❖ (대상)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산재은폐로 인한 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5개소

연번	사업장명 (현장명)	업종	규모
1	대성에너지(주)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300~499인
2	레오개발 주식회사 (풍남 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중 골조공사)	건설업	50~99인
3	삼우기술개발(주) 원주봉화산벨라시티2차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건설업	5인 미만
4	(주)에코비트워터 상주사업소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5~49인
5	(주)정민건설 (S-Oil Offsite Improvement Plan공사중 [CON-4] 원유토목기초공사)	건설업	50~99인

[제1항 제5호] 산재미보고 사업장

❖ (대상)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보고한 사업장

○ 산재미보고로 인한 공표 대상 사업장은 롯데네슬레코리아주식회사, 두산에너지빌리티(주) 등 총 37개소

- (규모별) 50명 미만 사업장이 절반 이상 차지(20개소, 52.6%)

구 분	계	50명미만	50 ~ 99명	100 ~ 299명	300 ~ 499명	500 ~ 999명	1,000명이상
사업장 수 (점유율, %)	37 (100.0)	20 (54.1)	2 (5.4)	9 (24.3)	1 (2.7)	2 (5.4)	3 (8.1)

[제2항] 원청도 함께 공표

❖ (대상) 수급인의 사업장이 '사망2명 이상', '사망만인율 동종동규모 평균 이상', '중대산업사고 발생'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도급인 사업주가 제63조(도급시 안전·보건 조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재해를 입은 경우 도급인 사업장도 함께 공표

○ 산안법 제63조 위반으로 원청도 함께 공표되는 경우는 총 224개소

- (공표기준별) 대부분 사망만인율(제1항 2호), 중대재해 발생 등(舊제1항 제1호)에 따른 공표 사업장 원청이 해당

구 분	계	사망2명이상	사망만인율	중대산업사고	(舊법) 중대재해+재해율
사업장 수 (점유율, %)	224 (100.0)	9 (4.0)	130 (58.0)	6 (2.7)	79 (35.3)

[구 제1항 제1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대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①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210개소*

- (중대재해자 수) 중대재해자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4개소, 4명 발생 0개소, 3명 발생 2개소
- (업종별) 절반 이상(136개소, 64.8%)이 건설업이며, 이 외에는 기계기구·금속제조업(12.4%),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4.3%), 화학·고무제품제조업(2.3%), 기타의 각종사업(2.3%) 순

구 분	계	건설업	기계기구 금속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화학및 고무제품 제조업	기타의 각종사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수제품및 기타제품 제조업	기 타
사업장 수 (점유율, %)	210 (100.0)	136 (64.8)	26 (12.4)	9 (4.3)	5 (2.3)	5 (2.3)	4 (1.9)	4 (1.9)	21 (10.0)

- (규모별) '50명 미만' 사업장(174개소, 82.9%)이 대부분이며, '50~99명'(7.1%), '100~299명'(7.3%) 순

구 분	계	50명 미만	50 ~ 99명	100 ~ 299명	300 ~ 499명	500 ~ 999명	1,000명 이상
사업장 수 (점유율, %)	210 (100.0)	174 (82.9)	15 (7.1)	13 (6.2)	3 (1.4)	4 (1.9)	1 (0.5)